

의안
번호

108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3. 27.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경수현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108호

다. 제출일자 : 2023. 03. 17.

라. 회부일자 : 2023. 03. 20.

2. 제안이유

- 최근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에서 ‘보유’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로 전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본 조례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가치 재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한다. 또한 「성북

여성취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을 추가하여 센터의 직업훈련교육 기능 및 시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한다.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 나.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조례의 조문 전체).
-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라.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안 제8조제4호).
- 마.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3. 17. ~ 2023. 03. 22.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조례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최근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에서 ‘경력보유’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로 전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성북여성 취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을 추가하여 센터의 직업훈련 교육 기능 및 시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조례 내 전체적(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1호)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보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경력보유’로 잠재적 의미를 전환하여 여성 고용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

이와 관련하여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2020.11.4. 시행)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고 뒤이어 안양시와 경기도가 조례¹⁾를 전부개정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2021)는 경력단절 여성을 성차별적 용어로 선정²⁾한 바 있음.

1)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22. 10. 20. 시행)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2023. 3. 6. 시행)

- 안 제8조제4호는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보유 유지’로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이는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관점을 개선하고자 수정한 것이며, 안 제9조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직업훈련교육 등 경력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조치로 보임.
- 그 밖의 안 제1조 및 안 제5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인용 법령을 삭제 및 변경하였음.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육아·돌봄 등의 이유로 일을 중단함으로써 경력이 단절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가치를 재정립하고, 경력 보유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됨.

2)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2021. 보고서 47~48페이지)에서 성차별적 용어로 선정 이유 :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와 여성이라는 용어를 결합시킨 차별적 용어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용어로 선정함.